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선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04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10.

발 의 자 : 강선우 · 이재관 · 한병도
한정애 · 임호선 · 윤준병
김영호 · 서미화 · 김 윤
강준현 · 허종식 · 문정복
허 영 · 서삼석 · 정준호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등 잇따른 중대아동학대사건 발생으로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대응 과정을 검토하고,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조인, 의료인, 아동복지전문가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모든 아동학대 사망 사건 및 중대아동학대사건 발생 시 조사·분석을 의무화하고자 함.

한편 아동학대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해 아동권리보장원 내에 아동학대 사망사례 분석TF팀이 시범 운영된 바 있으며, 과거 대구, 포천, 울주 등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으로 인한 조사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음. 그러나 아동학대 사망 사건 분석을 위한 자료 취득과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로 관계 기관에 자료협조를 거절받은 사례가 다수 발생해 사실

상 심층적인 사례분석이 불가한 상황임.

이에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의 사건 조사·분석을 위해 자료요청 및 열람 권한 등 사례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(안 제27조의4 및 제27조의5 신설).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의4 및 제27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7조의4(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사망 사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(이하 “조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조사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된 사람
2. 「의료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아동학대 사건 관련 경험이 많은 사람
3. 아동복지분야 전문가로서 아동학대 사건 관련 경험이 많은 사람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아동학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④ 조사위원회의 업무,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7조의5(자료제출 및 사실 조회) ① 조사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·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.

② 조사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7조의4(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사망 사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(이하 “조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</u> <u>② 조사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</u> <u>1.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된 사람</u> <u>2. 「의료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아동학대 사건 관련 경험이 많은 사람</u> <u>3. 아동복지분야 전문가로서 아동학대 사건 관련 경험이 많은 사람</u> <u>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</u> <u>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사위원</u>

<신 설>

회의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아동학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④ 조사위원회의 업무,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7조의5(자료제출 및 사실 조회) ① 조사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·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.

② 조사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.